

학급자치회 임원 선거 관리 규정

수지초등학교

2025년 12월 19일 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학급자치회 임원 선거(이하 “임원 선거” 라 한다)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

이 규정은 학급자치회 회장 선거와 부회장 선거에 적용한다.

제3조(학급선거관리위원회)

- ① 임원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급 학생들로 구성된 학급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 라 한다)를 두며,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급선거관리위원회로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선거일 **5일**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.
- ③ 위원회 위원은 3명으로 하며, 위원은 학급 임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이나 투표로 선출하고, 위원명단을 선거일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⑤ 학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및 학급 선거를 진행한다.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.
-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,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.
-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4조(선거일 공고)

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**5일**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선거권자)

임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(이하 선거권자 라 한다)는 본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으로 선거일에 출석한 학생으로 한다.

제6조(선거인명부 작성)

- ①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. 이때 학급명렬표 사본을 선거인명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.
- ② 학급자치회는 선거일에 선거인명부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선거인명부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고,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.

제7조(후보자 자격)

- ①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의 선거일에 출석한 학생(감염병 등으로 등교중지된 학생은 온라인 방법으로 입후보 가능)으로 한다.

- ②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.
- ③ 1학기 학급자치회 임원은 2학기에 같은 직 연임 및 하위직에 입후보할 수 없으나, 부회장은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.
- ④ 학생자치회 임원(전교 임원)은 당해 임기 학기의 학급자치회 임원과 겸임할 수 없다.

제8조(선거 방법 및 투개표)

- ① 임원 선거는 위원회 구성 및 선거일 공고, 후보 등록, 소견 발표, 투표, 개표의 순으로 진행한다.
- ② 먼저 회장 선출 후 부회장을 선출하며,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낙선된 후보자는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.
- ③ 입후보는 자의 또는 타인의 추천으로 한다.
- ④ 입후보자는 소견발표를 통해 후보자 검증의 기회를 가지며, 입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는 추으로 결정한다.
- ⑤ 선거권자는 투표자 명단에 서명한 후 투표를 실시한다.
- ⑥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, 투표 방법은 각 학급에서 무기명 수기 투표로 투표용지는 담임교사가 날인한 용지를 사용하여 진행한다.
- ⑦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자 또는 참관인 앞에서 공개로 진행한다.
- ⑧ 감염병 등으로 인해 재검표가 가능한 온라인 방법을 활용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당선인 결정)

- ① 위원회는 개표 결과 회장 선거의 후보자 중 남·녀 구분 없이 최고득점자를 회장 당선인으로, 부회장선거에 나온 후보자 중에서 남·녀 구분 없이 최고득점자를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- ② 개표 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- ③ 단일후보의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한다.
- ④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.

제10조(보궐선거)

- ① 학급자치회 임원이 전학 등의 사유로 공석이고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 2/3일 이상 남았을 경우,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
- ② 보궐선거 미실시로 회장 유고의 경우 회장직은 부회장이 회장의 역할을 대행하고 부회장이 유고일 경우는 공석으로 둔다.

제11조(보칙)

- ① 위원회는 투표지를 당해 학년도 학년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-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(교감, 담당부장, 학생자치 담당교사)의 자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- ③ 각 호의 서식은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,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